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7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한정애·이학영·송옥주

서영교 • 정성호 • 문진석

허종식 • 황 희 • 허 영

김주영 · 김영진 · 안도걸

임오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2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	
가 기간 중 최초 <u>5일</u> . 다만,	<u>10일</u>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	
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